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되고, 국가통계연구원에 소득이동통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하면서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하고, 통계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과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며,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의 정원 18명(8급 18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

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8명(7급 18명)을 상호이체하며,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에 설치한 지능정보화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26명, 8급 2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26명, 7급 25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교육원장”을 “통계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을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및 사회조사과장”으로 한다.

- ② 동남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의2의 제목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전단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6장(제14조)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2월 25일”을 “2027년 2월 25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87”을 “689”로 하고, 일반직 계 “686”을 “68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0”을 “29”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7”을 “29”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0”을 “151”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3”을 “202”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7”을 “185”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75”를 “57”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을 “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87”을 “689”로 하고, 일반직 계 “686”을 “68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0”을 “29”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8”을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0”을 “151”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
주사 또는 사서주사 “206”을 “205”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
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0”을 “188”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
는 운전서기 “68”을 “5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
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7”을 “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를 “통
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로 하고, 총계 “32”를 “33”
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5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1”로 하고, 서
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88”을 “92”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
사 “251”을 “27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
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4”를 “375”로 하고, 행정서기
·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88”을 “481”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

·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3”을 “135”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5의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8”을 “9”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87”을 “91”로
하고,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
사 “275”를 “297”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5”를 “376”으로 하고, 행정서기
·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63”을 “45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
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3”을 “135”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1”로 한다.

별표 5의3의 제목 중 “통계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를
“국가통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로 하고, 총계 “51”
을 “52”로 하며, 일반직 계 “51”을 “5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0”
을 “51”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u>통계교육원</u>	제3장 <u>통계인재개발원</u>
제6조(통계교육원) ①통계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통계인재개발원) ①통계인재개발원장----- ----- --.
②통계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통계인재개발원-----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통계청) ① (생략)	제8조(지방통계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동남지방통계청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 · 운영하는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

③ 지방통계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통계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③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및 경제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7. ----- ----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및 사회조사과장---- ----- ----- ----- -----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u>통계개발원</u>	제4장의2 <u>국가통계연구원</u>
제9조의2(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	제9조의2(국가통계연구원) 국가통계연구원-----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87</u>	<u>689</u>	+2
·	·	·	
·	·	·	
일반직 계	<u>686</u>	<u>688</u>	+2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8</u>	<u>9</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0</u>	<u>29</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7</u>	<u>29</u>	+2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 사무관	<u>150</u>	<u>151</u>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 주사·전산주사·농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u>203</u>	<u>202</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u>167</u>	<u>185</u>	+18
·	·	·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 서기·공업서기·농업서 기·전산서기 또는 운전 서기	<u>75</u>	<u>57</u>	-18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7</u>	<u>8</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	·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7</u>	<u>689</u>	+2
·	·	·	
·	·	·	
일반직 계	<u>686</u>	<u>688</u>	+2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8</u>	<u>9</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0</u>	<u>29</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8</u>	<u>30</u>	+2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 사무관	<u>150</u>	<u>151</u>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 주사·전산주사·농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u>206</u>	<u>205</u>	-1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u>170</u>	<u>188</u>	+18
·	·	·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 서기·공업서기·농업서 기·전산서기 또는 운전 서기	<u>68</u>	<u>50</u>	-18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 ·농업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7</u>	<u>8</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	·	

[별표 4]

통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u>	<u>33</u>	+1
일반직 계	<u>32</u>	<u>33</u>	+1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 사보	<u>6</u>	<u>7</u>	+1
·	·	·	
·	·	·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2</u>	<u>1</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8</u>	<u>9</u>	+1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 무관	<u>88</u>	<u>92</u>	+4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 주사·농업주사·전산주 사 또는 사서주사	<u>251</u>	<u>273</u>	+2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 사보	<u>394</u>	<u>375</u>	-19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 서기·농업서기·전산서 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88</u>	<u>481</u>	-7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 ·공업서기보·농업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3</u>	<u>135</u>	+2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1</u>	-2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2</u>	<u>1</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8</u>	<u>9</u>	+1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 무관	<u>87</u>	<u>91</u>	+4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 주사·농업주사·전산주 사 또는 사서주사	<u>275</u>	<u>297</u>	+22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 사보	<u>395</u>	<u>376</u>	-19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 서기·농업서기·전산서 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63</u>	<u>456</u>	-7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 ·공업서기보·농업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3</u>	<u>135</u>	+2
사무운영서기보	<u>13</u>	<u>11</u>	-2

[별표 5의3]

국가통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u>	<u>52</u>	+1
일반직 계	<u>51</u>	<u>5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0</u>	<u>51</u>	+1